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9월 5일

나. 발 의 자 : 박교상, 강승수, 권기만, 김상조, 김성현, 김수민,
김정곤, 김정미, 김재상, 김태근, 박주연, 손홍섭,
윤영철, 이명희, 임춘구, 허 복, 황경환 (17인)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9월 10일

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 교 상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저소득층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
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 - 저소득 주민은 수급자, 한부모, 의사상자 가족으로 함.

○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(안 제3조 ~ 제4조)

-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임.
- 지원기준은 교복의 동·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

○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(안 제5조 ~ 제6조)

-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후 시장이 검토후 지원 대상자에 계좌입금

○ 지원중단 및 환수(안 제7조 ~ 제8조)

-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, 부당 수령자는 즉시 환수조치

라. 참고사항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조례안은

-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 ~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은 수급자, 한부모, 의사상자 가족으로 하며,
- 안 제3조 ~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구미시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에 교복의

- 동·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,
- 안 제5조 ~ 제6조는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으로 입학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후 시장이 검토후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며,
 - 안 제7조 ~ 제8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고 부당 수령자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충주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5개 지자체에서 세대당 20~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, 우리시의 경우 세대당 3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2012년 기준, 지급대상자가 500여명으로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와 관련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, 예산이 수반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